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 4 차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수임사무 민간위탁 근거 신설 〉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39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제2217139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수임사무 민간위탁 근거 신설 (안 제76조제2항 신설)	2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221713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연회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6. 2. 27.
3. 회 부 일 : 2026. 3.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은 지자체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되며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되어 있음.

이에, 업무 주체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타당성 평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수임사무 민간위탁 근거 신설(안 제76조제2항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임 업무의 일부를 민간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권한의 위탁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u><신설></u>	제76조(권한의 위탁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u>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	② <u>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제75조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③ <u>제1항 및 제2항</u> ----- -----

현행	개정안
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 ----- ----- ----- -----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5조의2¹⁾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노선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현행법 제75조제1항²⁾ 및 현행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나목³⁾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필요성·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광위”)에 위임되어 있음.

이에 따라 대광위는 광역버스 노선(노선을 신설하는 경우 포함)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매년 외부 용역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에 따라4)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맡아 수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광역버스사업 지원 사업 용역 추진 실적 】

연도	용역명	계약자	계약액 (백만원)	계약방법	과제수행기간
2022	22년도 광역버스 노선 타당성 평가 용역	한국교통연구원	205.8	일반경쟁 →수의	'22.09.27.~'23.09.22.
2023	23년도 광역버스 노선 타당성 평가 용역	한국교통연구원	250	일반경쟁 →수의	'23.10.16.~'24.10.10.
2024	24년도 광역버스 노선 타당성 평가 용역	한국교통연구원	245	일반경쟁 →수의	'24.12.3.~'25.07.31.

* (수의계약 사유) 입찰공고 결과 단일 응찰 된 이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및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고시’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

자료: 국토교통부

출처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국토교통위원회, 2025. 8.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선만 해당한다) 및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나.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18. 한국교통연구원

그런데, 업무 수행 방식을 보면, 업무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일반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단일 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형식적 계약절차 이행에 따른 불필요한 기간⁵⁾이 소요되고 있고, 이로 인한 관련 예산의 연례적 이월이 국회의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기도 하였음⁶⁾.

이에 개정안과 같이 대광위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⁷⁾ 일반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해당 업무의 효율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발주부터 계약까지 약 2.5개월 소요

6) 광역버스 타당성 평가 연구용역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계약절차기간을 줄이거나 계약 추진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국토교통위원회, 2025. 8. p.478)

【 최근 3년간 광역버스사업 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2	210	210	41	-	251	206	43	2
2023	250	250	43	-	293	41	250	2
2024	250	250	250	-	500	421.5	73.5	5

* 광역버스사업 지원 사업은 2021년까지 광역교통정책연구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2022년부터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됨.

※ 자료: 국토교통부

출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국토교통위원회, 2025. 8.

7) 참고로 대광위에 따르면, 노선 타당성 평가 업무 외에 대광위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중 민간 용역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없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매년 실시되는 노선 신설에 대한 일관성 있는 타당성 평가를 위해 교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

광역버스 노선 신설·타당성 평가 등의 업무 주체인 대광위에서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하도록 하여 업무 추진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4